

폰트 사용 권한 및 저작권법

1. 폰트 저작권법 소개


2. 폰트 주요 저작권社 사용 권한

- 산돌커뮤니케이션
- 윤디자인
- 한양정보통신
- 한글과컴퓨터
- Adobe
- 기본 사용 범위 외 추가 사용권이 필요한 경우(한글과컴퓨터 제외)

3. 번들 폰트 사용 설명


4. 폰트 관리의 필요성

1. 폰트 저작권법 소개


IMON Soft [Season11] 폰트 사용 권한 및 저작권법 

폰트 저작권법 보호 대상

PC Font 폴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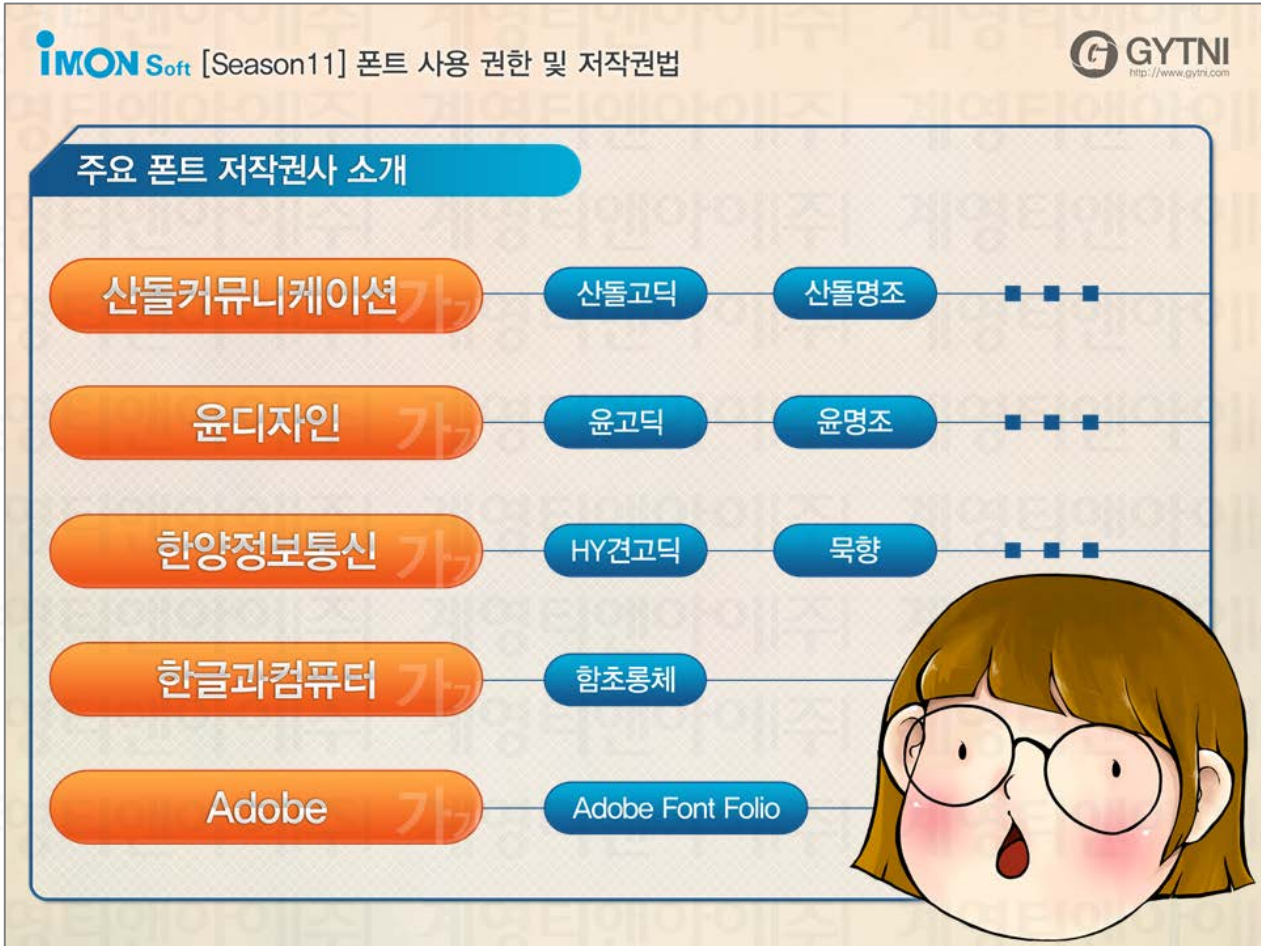


**.ttf/.fon/.ttc 등 파일명으로
저장된 폰트 파일만 저작권 보호**



- 폰트 글자체, 폰트, 글꼴, 타이프페이스(typeface) 등 다양하게 표현
- 폰트 파일은 2009년 7월 23일 시행된 저작권법 제4조 9항, 제9조에 의하여 컴퓨터 프로그램 저작물에 해당되어 저작권 보호를 받음
- 글자의 모양인 폰트 도안은 저작권법상 보호 대상이 되지 않고 PC Fonts 폴더에 있는 파일명으로 저장된 .ttf / .fon/ .ttc 등의 폰트 파일은 저작권법에 의하여 보호

2. 폰트 주요 저작권사 사용 권한



① 산돌커뮤니케이션

- 산돌 고딕, 산돌 명조, 산돌 광수 등
- 산돌 구름 (월, 년 결제 방식), 날개, 패키지, 통합용 폰트 (영구라이선스)로 판매
- 라이선스 사용 범위: 문서 작성, 인쇄물, 웹사이트, 작품, 개인 영상, 옥외간판(비영리용 간판)

② 윤디자인

- 윤고딕, 윤명조, 봄날 등
- 윤멤버십 (1년 결제 방식), 날개/ 아트(3년 사용)/ 패키지(영구라이선스) 폰트로 판매
- 라이선스 사용 범위: 문서작성, 인쇄물, 웹사이트, 개인 영상 가능
(* 멤버십으로 사용하는 경우 CI/BI 제작까지 사용)

③ 한양정보통신

- HY 견고딕, HY 울릉도, 묵향 등
- 패키지 폰트 (영구라이선스), FAMILY SITE (월, 년 결제 방식)로 판매
- 라이선스 사용 범위: 문서 작성, 웹사이트, 인쇄물 사용 가능

④ 한글과컴퓨터

- 함초롬체 (돋움체, 바탕체)
- 개인 및 기업 사용자에게 무료로 제공되며 모든 저작물에 사용할 수 있으며 자유롭게 배포 가능
단, 상업적인 목적으로 배포 및 수정 불가

⑤ Adobe

- Adobe Font Folio (영구라이선스)
- Adobe Font Folio 1패키지 구매 시 5user 사용 가능
- 라이선스 사용 범위: 문서 작성, 웹사이트, 인쇄물 사용 가능

⑥ 폰트 기본 사용 범위 외 추가 사용권이 필요한 경우 (한글과컴퓨터 제외)

- 영상, 애플리케이션, 게임, CI/BI, E-Book/E-Learning, 임베딩

IMON Soft [Season11] 폰트 사용 권한 및 저작권법

주요 폰트 저작권사 판매 방법

클라우드

클라우드

산돌커뮤니케이션

월 또는 연 단위 계약 방식 산돌 구름

윤디자인

1년 단위 계약 방식 **윤멤버십**
3년 단위 계약 방식 **날개/아트 폰트**

한양정보통신

연 단위 계약 방식 Family Site(폰트바다)

영구라이선스

영구라이선스

산돌커뮤니케이션

날개 / 패키지 / 통합용 폰트

윤디자인

패키지 폰트

한양정보통신

패키지 폰트

IMON Soft [Season11] 폰트 사용 권한 및 저작권법

주요 저작권사 폰트 사용 권한

※ 구매한 폰트 기본 사용 범위

	문서 작성	인쇄물	웹사이트	작품	개인 영상(비영리)	옥외간판(비영리)
산돌커뮤니케이션	○	○	○	○	○	○
윤디자인	○	○	윤멤버십일 경우 CI/BI 제작 사용 가능		○	○
한양정보통신 Adobe	○	○	○			

영상
(영리)

애플리케이션

게임

CI/BI

E-Book

임베딩

폰트 기본 사용 범위 외
추가 사용권 필요

3. 번들 폰트 사용 설명

IMON Soft [Season11] 폰트 사용 권한 및 저작권법

번들 폰트 특정 범위 사용

7.1. 폰트 파일에 대한 저작권 위반 문제

-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로서 보호되는 폰트 파일은 프로그램 자체를 무단 복제하거나 불법적으로 전송하는 등의 방법으로 이용하지 않는 한, 폰트의 이용 행위 자체만으로는 저작권 침해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음
- 폰트 프로그램을 정상적으로 구매 또는 라이선스 받아 PC에 설치하였는거 이후에 대해서만 저작권자의 저작권이 미치는 것이며, 이후의 이용행위에 대해서는 권리자의 권리가 미치지 않음

<대법원 2001.5.15 선고 98도732 판결>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상 보호되는 컴퓨터프로그램의 보호범위는 창작적인 표현 형식이 담긴 컴퓨터프로그램의 문장 그 자체에 한정되는 것이고, 컴퓨터프로그램의 운영을 통하여 표현되는 결과물은 보호될 수 없다

- 사용자 또는 종업원 등이 업무에 관하여 폰트 파일을 불법으로 사용하는 등 저작권법을 위반한 경우, 행위자 외에 법인 등도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다하지 아니한 경우 책임을 부담함 (저작권법 제141조)

7.2. 폰트 파일에 대한 계약 위반 문제

- 폰트 파일의 이용과 관련하여 저작권 침해와 별도로 계약 위반에 대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
- 권리자로부터 적법하게 이용허락 받은 편집용 프로그램을 컴퓨터에 설치하고 이를 이용하여 B(Brand Identity)나 C(Corporate Identity) 등을 제작하는 경우 저작권 침해의 문제는 발생하지 않음

다만, 계약서 또는 사용약관 등에 특정 이용에 대해서는 별도의 계약이 필요하다는 내용이 고지되어 있을 경우, 권리자의 계약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서 권리자는 계약 위반에 따른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음

➤ 문화체육관광부 - 폰트 파일 저작권 바로 알기 중

- 특정 이용에 대한 별도의 계약이 필요하다는 내용이 고지되어 있을 경우 계약 없이 특정 범위 사용 시 민사상 손해 배상 청구 가능성 존재

- 정품으로 구매한 프로그램에 포함된 기능을 사용하는 것은 권리자와 이용자 간의 계약에 따른 범위 내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권리자가 허락한 것으로 프로그램에서 지원하고 있는 폰트 파일을 활용하여 저작물(포스팅, 그림/PDF 저장 등)을 제작하는 것은 저작권 위반에 해당하지 않음
단, 프로그램 기능 외 활용은 저작권사에 문의 필요 (문화체육관광부 답변 인용)
- 프로그램 사용약관 또는 계약서 등에 특정 이용에 대한 별도의 계약이 필요하다는 내용이 고지되어 있는 경우 계약 없이 범위 위반 사용 시 민사상 손해 배상 청구 가능성 존재
(문화체육관광부 - 폰트 파일에 대한 저작권 바로 알기(부록) 내용 인용)

4. 폰트 관리의 필요성

- 일반 시스템에서는 관리자가 사용자들의 폰트 현황 파악이 어려우며 사용자들의 불법 폰트 사용으로 인해 Audit 이슈가 발생하기 때문에 폰트 관리가 반드시 필요

폰트 사용 권한 및 저작권법 대본

안녕하세요. 모니입니다.

오늘은 이슈가 많은 폰트에 대해 알아보도록 할게요~

글자체, 폰트, 글꼴, 타이프페이스(typeface) 등 다양하게 표현되는 폰트가 저작권법에 의해 보호된다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

폰트 파일은 저작권법 제 4조 9항에 의해 컴퓨터 프로그램 저작물로 저작권 보호를 받고 있습니다.

단, 글자의 모양인 폰트 도안은 저작권법상 보호 대상이 아니며 PC Font 폴더에 확장자가 .ttf / .fon / .ttc 등 파일명으로 저장된 폰트 파일만 저작권법에 보호됩니다.

주요 폰트 저작권사로는 산돌고딕, 산돌명조 등의 산돌커뮤니케이션, 윤고딕, 윤명조 등의 윤디자인, HY 견고딕, 묵향 등의 한양정보통신, 함초롱체의 한글과컴퓨터, Adobe Font Folio의 Adobe사가 있습니다.

그럼 주요 폰트 저작권사들에 대해 알아보을까요?

산돌커뮤니케이션은 월 또는 연 단위 계약 방식의 산돌 구름과 날개, 패키지, 통합용 영구라이선스 폰트를 판매합니다.

윤디자인은 1년 단위 계약 방식의 윤멤버십, 구매 후 3년간 사용할 수 있는 날개, 아트 폰트, 영구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패키지 폰트를 판매하고 있습니다.

한양정보통신은 연 단위 계약 방식의 Family Site와 영구 라이선스인 패키지 폰트를 판매합니다.

다른 저작권사와 달리 한글과컴퓨터의 함초롱체는 개인 및 기업 사용자들 모두 무료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단, 상업적인 목적으로 배포 및 수정은 불가합니다.

그리고 Adobe사는 영구 라이선스로 판매하며 구매 시 5명의 사용자가 사용할 수 있습니다.

폰트를 구매했다고 모든 저작물에 폰트를 사용할 수 없다는 점 알고 계신가요?

구매한 폰트의 기본 사용 범위에 대해 알아보게요~

산돌커뮤니케이션은 문서 작성, 인쇄물, 웹사이트, 작품, 개인 영상, 옥외간판(비영리용)에 사용할 수 있으며 윤디자인은 문서 작성, 인쇄물, 웹사이트, 개인 영상에 사용할 수 있고 윤멤버십일 경우 CI/BI 제작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한양정보통신과 Adobe는 문서 작성, 웹사이트, 인쇄물에 사용 가능합니다.

하지만 영상(영리), 애플리케이션, 게임, CI/BI, E-BOOK, 임베딩에 사용할 경우 폰트 기본 사용 범위 외 추가 사용권이 필요합니다.

이번에는 번들 폰트 사용에 대해 알아보을까요?

문화 체육관광부에서는 정품으로 구매한 프로그램에 포함된 기능을 사용하는 것은 권리가 허락한 것으로

프로그램에서 지원하고 있는 폰트 파일을 활용해 그림, PDF 저장 등 저작물을 제작하는 것은 저작권 위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문화체육관광부는 폰트 파일 저작권 바로 알기를 통해 프로그램 사용약관 또는 계약서 등에 특정 이용에 대한 별도의 계약이 필요하다는 내용이 고지되어 있는 경우 계약 없이 특정 범위 사용 시 민사상 손해 배상 청구 가능성이 존재한다고 기재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사용 권한이 다양하게 존재하고 일반 시스템에서 사용자의 폰트 현황을 관리자가 파악하지 못하기 때문에 불법 사용으로 인한 Audit 이슈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Audit 이슈에 대비하기 위해 폰트관리는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